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8169호)

2025. 2.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요	4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8
3. 주요 내용 검토	9
4. 종합의견	30
※ 참고자료	3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5년 2월 14일
3. 회부일자 : 2025년 2월 1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하여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海洋遺傳資源) 채집·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 약화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해상 해양유전자원 등의 채집·관리에 대한 정보와 해양유전자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의무화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동 이익공유 적용범위 및 공해상 해양유전자원 현지내 채집 활동에 대한 정보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협정 발효 전 채집·생성된 해양 유전자원 등 이용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2) 공해상 해양유전자원 등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의무와 동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적용 구역, 설정 방식, 이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1) 구역기반관리수단은 당사자에 의해 제안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과학기술기구의 평가·권고 후 당사자총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2)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이 협정 및 당사자 권리와 불합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우 이의제기 당사자는 동 결정에 대한 적용제외를 선언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 대체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안 제23조).

다. 공해상 활동으로 인해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라. 개발도상국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의무, 조건 및 방식을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립함(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 비준 시 예외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비준하면서 별지와 같이 예외를 선언함.

4.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관련 국내법 정비 중¹⁾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추진경위

- 2004. 실무작업반 설치
- 2006 ~ 2015.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 2016 ~ 2017. 준비위원회 개최
- 2018 ~ 2023. 정부간 회의 개최
- 2023. 6. 19. 협정 채택
- 2023. 10. 31. 우리나라 서명(뉴욕)
- 2025. 2. 4. 제5회 국무회의 심의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2025. 2. 관계부처합동)'에 따라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725,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이 제안(2025.1.22.)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2025.1.23.)됨.

Ⅲ. 검토의견

1. 개요

가. BBNJ 협정의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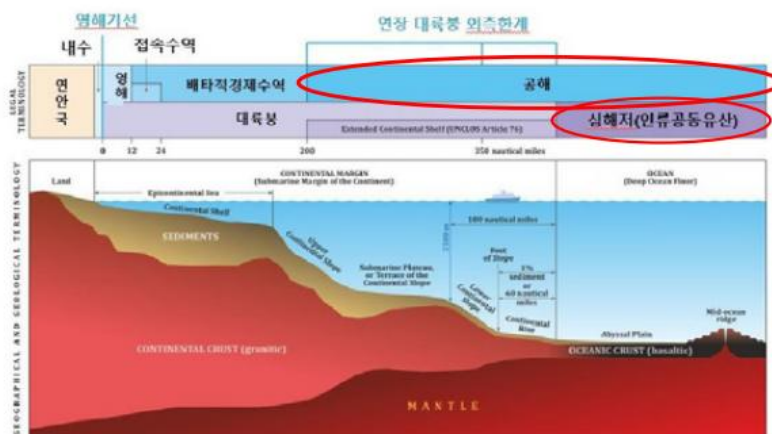
해양 관련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체계인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1982년 채택되었음.²⁾

그러나 UN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³⁾의 해양 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은 남획과 환경 오염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해양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제

2) 【참고자료 1】 UN해양법협약(UNCLOS) 개요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이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위치한 **공해**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심해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전체 해양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태적으로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많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심상민, (2020).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UN 내 논의 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외교안보연구소, 2쪽)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자료: ‘바다를 지키는 약속, BBNJ 협정 비준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2024.9.) 자료집

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동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 마련 요구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음.

(2) 의의

동 협정은 심해저 이행협정, 공해어업 협정에 이은 UN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⁴⁾으로, 바다 표면의 2/3를 차지하는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구적인 다자조약임.

(3) 추진 경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방형 실무작업반(Ad-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회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BBNJ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를 거쳤으며, 2017년 UN총회 결의 채택 이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2023년 3월 4일 협정안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23년 6월 19일 협정이 채택되었음.⁵⁾

서명 개방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이며, 2025년 2월 중순 현재 110개국이 서명하였고, 우리 정부는 2023년 10월 서명하였음.

한편, 동 협정은 60개국 비준 시 이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되는데, 2025년 2월 중순 기준 17개국이 비준하였음.⁶⁾

4) UNCLOS 이행협정으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1994년)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1995년)이 있음(우리나라는 각각 1996년 1월 29일과 2008년 2월 1일에 비준함).

5) 【참고자료 2】 세부 추진 경과

나. 주요 내용 및 체계

동 협정은 12부 76개 조문,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협정 제2부부터 제5부까지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의 채집·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의 일정 부분 또는 선진국의 기여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이익을 공유함.

다만, 우리나라는 동 협약 발효 전에 채집·생성한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 협정 적용의 예외 선언을 하였음.

둘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셋째, 공해상 활동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오염이 발생하거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을 의무화하고 그 상세 절차를 규정함.

넷째, 개발도상국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의무, 조건 및 방식을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

6) 팔라우, 칠레, 벨리즈, 세이셸, 모나코, 모리셔스,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쿠바, 몰디브, 싱가포르,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스페인, 프랑스(비준일 순)

<BBNJ 협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제1부	일반조항
<u>제2부</u>	<u>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u>
<u>제3부</u>	<u>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u>
<u>제4부</u>	<u>환경영향평가</u>
<u>제5부</u>	<u>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u>
제6부	제도정비
제7부	재원과 재정체계
제8부	이행준수
제9부	분쟁해결
제10부	이 협정의 비당사국
제11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제12부	최종조항
부속서 I	구역 확인을 위한 예시적 기준
부속서 II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유형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7)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⁸⁾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동 비준동의안은 당사자인 국가에 대하여 해양유전자원 채집 전 관련 정보 통보(제12조) 및 해양유전자원 등과 관련된 활동에 따른 이익 공유 및 정보 기탁(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인 등에게 해양유전자원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이익 공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는 해양유전자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바, 동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7)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8)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이를 i) 법률로 규정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으로 해석하는 견해(광의의 해석)와 ii)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의 수정·변경을 요하거나 국내법의 제정 없이는 조약을 실시할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 해석하는 견해(협의의 해석)가 있음.(노기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법과 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2023, 91-92쪽.)

3. 주요 내용 검토

가. 해양유전자원의 정보 공유 의무화 및 이익 공유(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협정의 요지

협정 제2부(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⁹⁾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등의 정보 공유 대상·방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1) 대상(제10조)

제10조는 정보 공유와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는 MGR과 DSI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우선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동 규정들은 협정이 발효된 후에 채집되고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MGR과 DSI 관련 활동에 대하여 적용됨. 즉,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채집되거나 생성된 MGR과 DSI 관련 활동은 정보 공유와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당사자가 협정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시 서면으로

9) MGR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유전자, 유전자 산물(효소 등)와 같은 유전 물질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자원을 의미함.

DSI는 해양유전자원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해양 생물의 DNA 및 RNA 염기서열 정보, 단백질 서열 데이터, 유전자 발현 및 기능에 관한 정보, 생화학적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예외를 선언하지 아니한 경우 발효 ‘이전’에 채집 또는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MGR과 DSI에 관한 이용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MGR과 DSI의 이용에 있어서 동 협정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임.

우리 정부는 비준 시 예외를 선언하기로 하여, 제2부의 규정들은 협정 발효 이후 채집되고 생성된 MGR과 DSI 관련 활동에만 적용될 것임.

<예외 규정>

예외

이 협정 제10조 및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채집되거나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

다음으로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 또는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으로 획득된 것으로 알려진 어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자원’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2) 정보 공유(제12조)

정보 공유는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 MGR 현지 채집 6개월 전 또는 현지 채집 시작 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채집에 관한 기본 사항에 관한 통보, ② 이용가능한 즉시 혹은 현

지 채집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채집 결과에 관한 통보, ③ MGR과 DSI가 상업화를 포함한 이용한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상업화 등 이용에 관한 통보임.

<정보 공유 개요>

시점	공개 대상 주요 정보
MGR 현지 채집 6개월 전 또는 채집 전 가능한 빨리	1. 수행되는 채집의 성격과 목적 2. 채집이 수립될 지리적 지역 3. 선박 이름 등 선박 정보 4. 최초 진입일 및 퇴거일 5. 프로젝트 책임자 성명 6. 개발도상국 들의 참여 가능성 7. 데이터관리계획
정보가 이용 가능해진 즉시 또는 MGR 현지 채집 후 1년 이내	1. DSI가 기탁되거나 기탁될 수장고 또는 데이터베이스 2. DSR이 기탁 또는 보관되어 있거나 기탁 또는 보관될 장소 3. 채집 위도, 경도, 수심 등 채집 지역에 대한 상세 보고 4.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수행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
MGR과 DSI가 상업화를 포함한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1. 등록된 특허 및 개발된 제품처럼 이용 결과가 확인될 수 있는 곳 2. 이용 가능한 경우, 이용 대상인 MGR에 관하여 정보 공유체계¹⁰⁾에 사후 채집 통보할 상세 내용 3. 이용 대상인 원시 시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 4. 이용 중인 MGR과 DSI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구상된 방식과 이를 위한 데이터관리계획 5. 시판된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와 후속 진전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

10) 정보공유체계란 동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개접근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그 운영 방식은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됨(협정 제51조)

3) 이익공유(제14조)

MGR 및 DSI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비금전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으로 나뉘어 공유됨.

비금전적 이익은 현행 국제 관행에 따른 시료와 시료 채집물에 대한 접근, DSI에 대한 접근, 과학 데이터에 대한 공개접근 등이며,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그 형태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함.

<비금전적 이익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2. 비금전적 이익은 이 협정에 따라, 특히 다음의 형태로 공유된다.

- 가. 현행 국제 관행에 따른 시료와 시료 채집물에 대한 접근
- 나. 현행 국제 관행에 따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
- 다. 현행 국제 관행과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따라 찾아낼 수 있고, 접근가능하며, 호환이 가능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과학 데이터에 대한 공개 접근
- 라.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12조에 따라 제공된 “BBNJ” 표준일괄식별자와 함께 통보에 포함된 정보
- 마. 이 협정 제5부에 규정된 관련 방식에 부합하는 해양기술이전
- 바. 연구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역량구축, 그리고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전담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에 속한 과학자 및 연구자를 위한 파트너십 기회, 특히 직접 관련된 실질적 파트너십 기회
- 사. 기술 및 과학 협력 증진,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자 및 과학 기관과의 기술 및 과학 협력 증진

아.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의 이익

금전적 이익은 선진국인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조성된 특별기금에 연례적인 기여금(이하 “연례기여금”)을 내게 되어 있음. 그 금액은 해당 당사자에게 산정된 분담금의 50%임.

다만, 당사자총회의 총의, 또는 총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3/4의 동의로 결정할 경우 연례기여금이 아닌 ①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② 상품판매수익 일정 비율의 지불금, ③ 당사자 활동의 총 수준에 따른 차등 수수료, ④ 그 밖에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 등으로 내게 됨.

<금전적 이익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6. 이 협정 발효 후, 선진국 당사자는 제52조에 규정된 특별기금에 연례 기여금을 낸다. 당사자 기여금의 비율은 제47조제6항마호에 따라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예산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산정된 분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해당 기여금 납부는 아래 제7항에 따라 당사자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7. 당사자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을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

자 4분의 3의 다수로 채택된다. 지출은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특별기금을 통해서 한다.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나. 상품판매수입의 일정 비율의 지급금을 포함한 상품화와 관련된 지급 또는 기여금

다. 당사자 활동의 총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차등 수수료

라.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들

(2) 협상의 주요 쟁점¹¹⁾

첫째, DSI 포함 여부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그룹은 협정에서 DSI 관련 사항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의견이었음. 이는 DSI까지 정보 공유 및 이익 공유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자국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임.

반면, 개발도상국그룹은 DSI를 정보 공유 및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정의도 분명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최종적으로 DSI에 관한 사항이 협정에 일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DSI의 범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DSI에 관한 정의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였고, 정보 공유도 DSI가 아닌 ‘MGR’ 채집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절충점에서 타협이 되었음.

11)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둘째, 금전적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공유 대상 이익의 범위에 금전적 이익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이익 공유 규모까지 규정하여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의견과, 금전적 이익 공유를 배제하고자 하는 선진국그룹의 의견 대립이 있었음.

최종적으로 금전적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수익의 00%를 기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동 협정에서 제시하지 아니하고 추후 당사자총회가 이익 공유의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합의안이 마련되었음.

셋째, 당사자총회에서의 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선진국그룹은 총의(consensus)¹²⁾에 의하여 이익 공유의 방법을 결정하기를 원하였으나, 개발도상국그룹은 다수결에 의할 것을 주장하였음.

최종적으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는 3/4의 다수로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3) 검토의견

공해(Deep Sea) 및 심해저에 대한 접근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것으로, 동 협정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지닌 해양 생물자원에 관한 연구 자료와 기술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

12) 전원 일치의 방법을 말함

상국과의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공해 자원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개발도상국에 분배됨으로써 이익 분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보다 앞선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의 정보를 공유받음으로써 관련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심해저 활동을 위하여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들 중 하나로,¹³⁾¹⁴⁾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다수 선진국의 우려와 같이 협정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 활용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익 감소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협정은 선진국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기여금을 매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여금은 추후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 ‘상품수익에 따른 일정 비율’을 납부하게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바, 비준에 따라 국가재정의 부담이 발생할 것임.

참고로,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매년 국제해저기구(ISA)와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분담금 및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ISA 분담금은 36만불, CLCS 기여금은 1.8만불

13) ISA의 이사국 중 B그룹은 심해저 주요 투자국으로,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사회 B그룹 회원으로 활동하게 됨.

14) 【참고자료 3】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공해 또는 심해저 MGR 및 DSI 연구사업 현황

입.¹⁵⁾

협정 비준 여부 결정에는 이러한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다만, DSI의 범위, 공유 대상 정보의 세부적인 항목이나 범위, 기여금의 액수, 금전적 이익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이 협정에 담기지 못함에 따라 비준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5) 【참고자료 4】 UN해양법협약 관련 분담금 및 기여금

나. 구역기반관리수단(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1) 협정의 요지

구역기반관리수단이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확정된 구역에서 이 협정에 따라 특정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분야나 활동을 관리하는 수단을 말하는데(제1조제1항),

협정 제3부(제17조부터 제26조까지)는 해양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당사자가 공해와 심해저에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절차 및 내용>

구분	내용
제안서 제출 (제19조)	당사자 개별, 또는 당사자 공동으로 사무국에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관련 제안서 제출
제안서 공개와 예비검토 (제20조)	사무국은 접수 즉시 제안서를 공개하고, 과학기술기구 ¹⁶⁾ 에 제안서를 송부하며, 과학기술기구는 제안서의 적정성을 검토
제안서 협의 (제21조)	당사자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견해와 정보를 고려하여 제안서를 수정하고 이를 과학기술기구에 제출
제안서 평가 (제21조)	과학기술기구는 수정된 제안서를 평가하고 당사자총회에 이를 권고

구분	내용
구역기반 관리수단 결정 (제22조 및 제23조)	당사자총회는 과학기술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구역기 반관리수단 설정 및 관련 조치에 대하여 결정 - 총의(consensus) 결정 원칙 - 다만, 총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로 당사자총 회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하였 음을 결정한 후,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로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채택
선택적 불구속 선언 (제23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보로 이의를 신청할 경우, 그 결정은 해당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함. 이의 제기 당사자는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조치 채택
모니터링과 검토 (제26조)	(과학기술기구)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를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당사자총회)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개정, 연장 또는 취소에 대하여 결정 또는 권고

(2) 협상의 주요 쟁점

첫째, 다른 기구의 구역기반관리수단과의 관계에 관하여, EU 등 유
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그룹은 당사자총회가 관련 기구의 구
역기반관리수단을 인정(recognize)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개발도상국그룹은 ‘인정(recognize)’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의 기구·제도에 동 협정이 상위규범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16)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당사자총회에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동 협정에 따라 과학기술기구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

에서 선진국그룹의 주장을 반대하였음.

최종적으로, 추후 당사자총회가 다른 기구가 채택한 기존의 구역기
물관리수단과의 체계(mechanism) 개발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마련하였음.¹⁷⁾

둘째, 구역기물관리수단의 선택적 불구속 선언에 관하여, 일부 선진
국은 당사자총회의 구역기물관리수단 결정에 대하여 선택적 불구속
선언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담을 낮춤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협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발도상국
그룹은 협정의 실효성 약화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음. 우리나라는 불
구속 선언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원칙적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음.

최종적으로 불구속 선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¹⁸⁾ 이 경우에도 동
일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대체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며, 3년마다 이
를 재검토 및 갱신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였음.

17) 4. 이 부의 목적 달성과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또는 관련 전지
구·지역·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가 채택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기존 구역기물관리수단에 관한 체계
개발을 심의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체계 개발을 결정
할 수 있다.

18) 제23조 의사결정

5. 위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근거한 이의
제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그 결정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협약에 따른 이의제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불합치한다.

나. 그 결정이 형식상 또는 실제로 이의제기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

다. 당사자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시, 실제로 그 결정을 준수할 수 없다.

(3) 검토의견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구역기반관리수단은 국가들이 보호, 복원, 유지가 필요한 구역을 찾아내고, 해당 구역 내의 주요 서식지, 기능, 생태계 이익을 밝힌 뒤 그 구역 내 과도한 개발이나 사용, 접근 등을 규제하는 관리방식임.¹⁹⁾

공해상의 보호구역 설정은 여러 해양과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분산되어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나,²⁰⁾ 이러한 지역적이고 분절적인 규제만으로는 광범위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바, 동 협정의 구역기반관리수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해양보호구역 설정 사례>

국제기구명	적용 범위	특징	사례 및 현황
남극 해양생물 보존위원회 (CCAMLR)	남극과 주변 해양	1) 어업이 전면 금지되는 no-take area 2) 일부 어업, 조사 및 기타 인간 활동이 허락되는 multi-purpose area 등으로 나뉨	-South Orkney Island를 둘러싼 해양지역을 no-take area로 설정 (2009)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협약 (OSPAR)	협약 체결국 내수 및 영해, 일부 공해 등	어업, 선박, 광물 채취 관련하여서는 규제 없음	협약 적용 구역의 6.4%에 496개가 설정

19) 박시원. (2022). BBNJ 협상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관리수단 쟁점 분석. 환경법연구, 44(2), 230쪽

20) 위의 글, 233쪽

다. 환경영향평가(제27조부터 제39조까지)

(1) 협정의 요지

환경영향평가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함(제1조제7항).

협정 제4부(제27조부터 제39조까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1. 스크리닝

- (실시요건)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 활동의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에 대한 이해가 저조한 경우
- (실시 주체) 당사자
- (포함 내용)
 - 계획된 활동의 목적, 위치, 기간, 강도 등 활동의 내용
 - 누적영향²¹⁾을 포함한 잠재적 영향에 관한 초기 분석 등

2. 환경영향평가

- (실시요건) 스크리닝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 (범위 설정) 당사자는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사 대상의 범위를 설정
- (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당사자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초안 작성·공개
- (보고서 심의 등) 과학기술기구의 보고서 초안 심의
- (견제장치) 과학기술기구는 당사자의 활동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허가한 활동의 승인 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활동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는 이 권고를 고려하여야 함

3. 전략환경평가

- 개별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난, 정책이나 계획 수준에 대한 환경평가를 규정함(세부 내용 미정)

(2) 협상의 주요 쟁점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과 관련하여, ‘사소하거나 일시적 영향’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중대한 오염 또는 심각하고 해로운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국가들 간 의견의 대립이 있었음.

최종적으로,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활동은 스크리닝(예비평가)을 하고, 그 결과 중대한 오염이나 심각하고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은 정식 평가를 수행하는 타협안에 합의하였음.

둘째,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주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그룹은 당사자가, 개발도상국그룹은 당사자총회가 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건 해당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되,

21) “누적영향”이란 알려진 과거 및 현재 활동과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유사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점증적인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관련 영향의 결과를 말한다.(제1조제6호)

다른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활동 주체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타협안을 마련하였음.²²⁾

(3) 검토의견

해양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UN해양법협약에서도 규정되었던 제도임. UN해양법협약은 각 국가들의 활동에 다른 해양환경오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고,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실행가능한 한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UN해양법협약 상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제4절 감시와 환경평가

제204조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1. 각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양립하는 범위내에서 직접적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인정된 과학적

22) 제31조 환경영향평가 절차

- 가. 스크리닝.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라 스크리닝을 시기적절하게 수행하고 그 결정을 공개한다.
- 1) 당사자가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제30조제1항가호의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이 협정상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한다.
 - 2) 당사자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위 가호1)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결정이 공개된 날부터 40일 내에 해당 결정을 한 당사자와 과학기술기구에 표명할 수 있다.
 - 3)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당사자가 결정이 내려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당사자는 그 우려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 4) 과학기술기구는, 위 가호2)목에 따라 당사자가 표명한 우려를 심의한 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표명된 우려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를 주고 그 답변을 고려한 후, 그 결정을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5) 위 가호1)목에 따라 결정을 한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의 모든 권고에 대하여 고려한다.
 - 6) 견해 및 과학기술기구의 권고의 표명은 공개되며,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방법에 의하여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노력한다.

2. 특히 각국은 자국이 허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영향을 계속 감시한다.

제205조 보고서 발간

각국은 제204조에 따라 획득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국제기구는 이를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가능한 한 평가하고 제205조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행 가능한 한’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며,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등의 한계를 지님.

반면 동 협정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당사자에 명확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이해관계자의 범위 또한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관련 전지구·지역·소지역·부문별 기구, 시민사회, 과학계 그리고 일반대중’으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UN해양법협약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음.

다만, 환경영향평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당사자총회 결정을 통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협정은 스크리닝 단계에서 누적영향을 포함한 초기 분석을 하게 되어 있으나, 누적영향의 평가 방법 및 세부 지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한편, 세부 지침 마련 후에도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그룹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과학기술기구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이를 판단할 권한이 당사자에 부여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시행 여부가 당사자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임.

라. 역량구축과 기술이전(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1) 협정의 요지

협정 제5부(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는 해양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접근과 역량구축, 기술이전에 관하여 규정함.

역량구축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국(SIDS), 최빈개발국(LDCs) 등이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양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해양기술이전을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해양 관련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공유, 연구 장비 지원, 해양 관측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2) 협상의 주요 쟁점

역량구축과 기술이전 관련하여 협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이 제기되었음.

첫째, 기술이전의 의무 수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해양기술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cooperate to achieve)’라는 문구에 합의하였음.

둘째, 기술이전 방식에 관하여 일부 선진국들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 제약적인 문구를 추가하기를 원하였으

나, 개발도상국그룹은 기술이전의 실질적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최종적으로, 해양기술이전은 ‘양허와 우대조건을 포함한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fair and most favourable terms, including on concessional and preferential terms)’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하였음.

(3) 검토의견

협정 비준 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의 개발·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을 지게 됨. 이는 재정적 부담이나 독자적인 기술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겠으나,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환경 위험 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임.

한편, 협상 결과 역량구축과 기술이전이 ‘의무’보다는 ‘협조’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어,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책임감 있는 이행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4. 종합의견

BBNJ 협정은 UN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임.

동 협정은 해양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도 해양생태계 악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리규범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협정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협정에 따른 해양유전자원 관련 정보 및 이익공유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고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기여금 납부 의무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한편 전략적인 비준 동의 시점 결정을 위하여 타 국가들의 비준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동 협정의 중요성에는 많은 국가가 공감하여 110개국이 서명을 하였으나, 협정문이 공식 채택된 2023년 6월 이후 2025년 2월 중순까지 비준국은 17개국으로 협정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

황임.

주요 국가의 비준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비준 전이며, 일본은 아직 서명을 준비 중인 단계임. 러시아는 동 협정에 부정적으로 서명과 비준 가능성이 낮으며, 유럽 국가 중 스페인과 프랑스는 각각 2025년 2월 4일과 2025년 2월 5일에 비준을 완료하였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UN해양법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국가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군사적 우려로 인하여 비준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양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상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견해임.²³⁾ 아울러,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60개국의 비준을 올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UN 해양총회 이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264

23) 우리나라는 해양에 관한 인류 공동의 당면 현안을 주제로 전 세계 각국 정상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OOC)'의 개최국으로, 동 회의는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예정임.

【참고자료 1】 UN해양법협약(UNCLOS) 개요

UN해양법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 협약의 발효와 우리나라의 참여

- 1982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체결, 1994년 발효
- 160개국 이상 비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해양 법체계
- 한국은 1996년 11월 28일 비준

2. 목적

- 해양 자원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 해양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 해양의 법적 질서 확립과 국제적인 협력 촉진

3. 주요 내용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해 등 해양 구역의 설정
-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등 항해권 규정
- 해양 자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시
- 해양 환경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존 규정
- 해양 과학 조사에 대한 규칙 제시
- 국가 간 해양 관련 분쟁 해결 절차 규정

4. 제도적 장치

- 국제해저기구(ISA): 국가 관할권 밖의 심해저 활동 관리
- 국제해양법재판소: 협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 해결
- 대륙붕한계위원회: 대륙붕 경계 설정 관련 사항 처리

【참고자료 2】 세부 추진경과

1. 개방형 실무작업반

2004년 UN총회 결의 59/24에 근거하여 개방형 실무작업반(Ad-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이 설치되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9회 회의를 하였음.

개방형 실무작업반은 2014년 네 가지 주요의제를 패키지로 하여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음. 네 가지 주요의제는, ①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② 구역기반관리수단, ③ 해양환경영향평가, ④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으로, 이는 BBNJ 협정의 주요내용을 이룸.

2015년 마지막 개방형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협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음.

2. BBNJ 준비위원회

2015년 UN총회 결의 69/292에 근거하여 BBNJ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가 설립되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4회의 회의를 하였음.

BBNJ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조약의 주요의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다양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구성요소 합의에는 실패하였음. 그러나 의견수렴 가능성이 있는 요소와, 다양한 견해가 있어 논의 지속이 필요한 요소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음.

3. BBNJ 정부간회의

2017년 UN총회 결의 72/249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음. 정부간회의에는 약 100여개 UN 회원국과 옵서버가 참여하였음. BBNJ 정부간회의는 코로나 이전 준비회의 1회와 본회의 3회가 개최되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본회의 3회가 개최되었음.

BBNJ 정부간회의에서는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별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국가별 선호의견을 취합하며, 의제별 협상을 지속하였음.

36시간의 연속 협상 결과로 2023년 3월 4일 협정안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23년 6월 19일 협정이 채택되었음.

**【참고자료 3】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공해 또는 심해저
MGR 및 DSI 연구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수행기관	비고
공해상 자원확보 및 기초효능 탐색	태평양, 인도양 등 공해 생물자원 확보 및 분석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국가 R&D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인도양, 서태평양)	동물플랑크톤, 저서생물 채집 및 분석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국가 R&D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의 적응진화 연구	급격한 얼음환경 변화가 극지 생물 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먹이 망 취약성, 건강성, 복원력을 예측 하는 생물통합센서스 구축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기관 고유 사업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사업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존조치 이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	남극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보존조 치 이행을 위한 생태계 건강성, 생 물자원 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등 (동·식물 플랑크톤 등 환경유 전체 DB 구축 및 군집구조 분석용 시료 확보 및 분석 등)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국가 R&D
포스트 극지 유전체 프로젝트: 극지 유용유전자 발굴을 위한 기능유전체 연구	남극 어류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 한 활용 가능 유전자원 발굴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기관 고유 사업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자료 4】 UN해양법협약(UNCLOS) 관련 분담금 및 기여금

□ 국제해저기구(ISA) 분담금

UNCLOS는 심해저자원 및 심해저활동 관리를 위해 ISA 설립(협약 제156조), 유엔 분담금 비율에 기초해 회원국 분담금 배정하여 ISA 예산으로 충당(협약 제160조제2항)

※ 동 기구 운영 위해 심해저협정 채택(1994.7.) 후 UNCLOS 규정에 의해 설립(1994.1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ISA 분담금 현황]

	'21	'22	'23	'24	'25
우리나라 분담금(만불)	22	22	28	30	36

□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자발적 기여금

UNCLOS는 대륙붕 바깥한계 설정 관련 심사·권고 위해 CLCS 설립(1997년, 협약 제76조제8항), 유엔총회 결의(A/RES/55/7) 통해 개도국 경비 지원 위한 자발적 기금 설립

[최근 5년간 우리나라 CLCS 기여금 납부 현황]

	'21	'22	'23	'24	'25
우리나라 기여금(만불)	1.9	2	1	1.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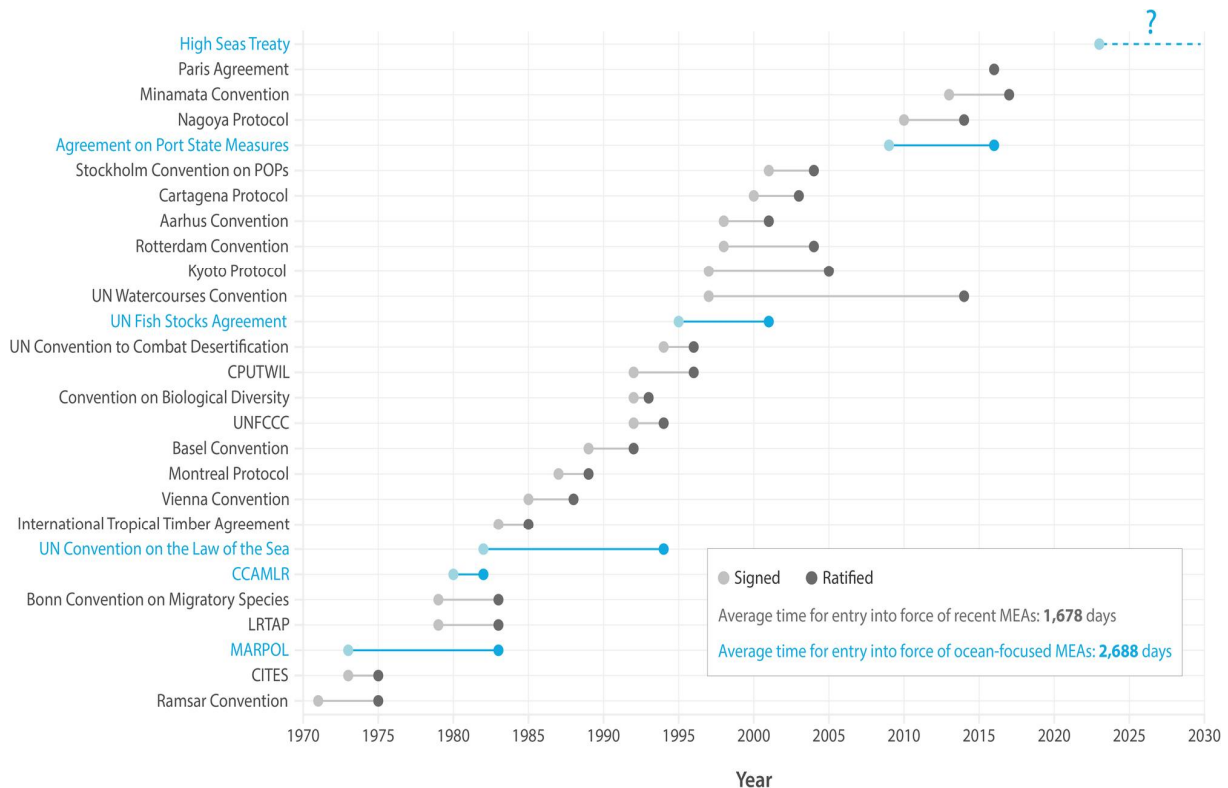
※ CLCS 운영을 위한 별도 분담금은 부재

【참고자료 5】 협정 비준국 현황

연번	국가명	비준일
1	팔라우	2024. 1. 22.
2	칠레	2024. 2. 20.
3	벨리즈	2024. 4. 8.
4	세이셸	2024. 4. 13.
5	모나코	2024. 5. 9.
6	모리셔스	2024. 5. 30.
7	마이크로네시아연방	2024. 6. 3.
8	쿠바	2024. 6. 28.
9	몰디브	2024. 9. 24.
10	싱가포르	2024. 9. 24.
11	동티모르	2024. 9. 26.
12	방글라데시	2024. 9. 26.
13	바베이도스	2024. 9. 26.
14	파나마	2024. 10. 23.
15	세인트루시아	2024. 11. 26.
16	스페인	2024. 2. 4.
17	프랑스	2025. 2. 5.

자료: <https://highseasalliance.org/>

【참고자료 6】 1970년대 이후 국제 다자환경협약(MEAs)의 발효 현황



자료: Blasiak, R., Jouffray, JB. When will the BBNJ Agreement deliver results?. npj Ocean Sustain 3, 21 (2024). <https://doi.org/10.1038/s44183-024-00058-6>

<주요 환경 관련 협약의 채택·발효일>

조약명	채택	발효일	한국 비준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년	1994년 11월 16일	1996년 11월 28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1973년	1983년 10월 2일 (부속서 I 및 II)	1993년 12월 24일
나고야 의정서	2010년	2014년 10월 12일	2014년 9월 18일
파리협정	2015년	2016년 11월 4일	2016년 11월 4일

【참고자료 7】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안]**

1. 주요 내용

-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하여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海洋遺傳資源) 채집·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해양생태계 악화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 이 비준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이 비준안 제12조에서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이하 “해양유전자원등”이라 함)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취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해양유전자원등이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자연인등”이라 함)에 의하여 상업화를 포함한 이용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한다(제8항)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비준안 제13조에서 당사자는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 또는 승인 및 참여가 있어야만 접근이 보장되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비준안 제14조에서는 해양유전자원등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연인등에 의한 해양유전자원등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제1항 및 제11항)고 규정하고, 자연인등이 해양유전자원등의 이용을 시작한 때부터 늦어도 3년 이내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즉시 이용 대상인 해양유전자원등을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수장고와 데이터베이스에 기탁되도록 보장하는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이 비준안에서는 입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서도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준안에 따라 당사자인 국가가 해양유전자원등의 정보 통보(제12조), 전통지식 접근의 사전 동의 등(제13조)과 해양유전자원등과 관련된 활동에 따른 이익 공유 및 정보 기탁(제14조)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인등에게 해양유전자원등의 정보 제공 및 이익 공유 의무를 부과하고 전통지식 접근을 위한 원주민의 사전 동의 등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는 해양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은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과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고 규정하면서,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등에 대한 접근 신고 의무(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제11조),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제공국의 절차 준수 의무 및 이익의 공유(제14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비준안에 따른 해양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이 비준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히 그 내용상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해양유전자원등의 정보 통보, 전통지식 접근의 사전 동의 등과 해양유전자원등과 관련된 활동에 따른 이익 공유 및 정보 기탁 등)에 대해서 그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비준안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비준안	관계 법령
제12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통보 1.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정보가 정보 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2. ~ 7. (생략) 8. <u>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u>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u>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u>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

그리고, 실행가능한 경우,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상업화를 포함한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용가능한 경우, “BBNJ” 표준일괄식별자를 포함하여, 다음의 정보가 이용가능해지는 즉시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한다.

- 가. 출판물, 이용가능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등록된 특허 및 개발된 제품처럼 이용 결과가 확인될 수 있는 곳
- 나. 이용가능한 경우, 이용 대상인 해양유전자원에 관하여 정보공유체계에 사후 채집 통보를 한 상세내용
- 다. 이용 대상인 원시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
- 라. 이용 중인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구상된 방식과 이를 위한 데이터관리계획
- 마. 시판된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와 후속 진전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

제13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전통지식

당사자는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 또는 승인 및 참여가 있어야만 접근이 보장되도록, 관련이 있고, 적절한 경우,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원 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 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생략)

3. 당사자는, 현행 국제 관행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용 대상인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BBNJ” 표준 일괄식별자와 함께 해당 이용의 시작부터 늦어도 3년 이내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즉시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수장고와 데이터베이스에 기탁되도록 보장하는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4. ~ 10. (생략)

11.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 협정에 따라 공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 따라서 이 비준안은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국내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비준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